

이에대한 행적적 처벌에 관한 근거는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처벌을 할수있습니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는 "나라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생강되는데 안그렇읍니까 ****

경남고성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감사결과공개 ...51번.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기획감사실		
담당자(연락처)	황지웅 (055-670-2073)		
접수일	2017-04-10 10:11:0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4-054968
답변일	2017-04-18 17:32:51		
답변내용	<p>[주관부서] : 기획감사실 [답변일자] : 2017-04-18 17:32:51 [작성자] : 황지웅 [전화번호] : 055-670-2073 [이메일] : [답변내용] :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남도 온라인 상담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p>		

민원요약

- 감사를 실시하여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감사 담당 외 1인에게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처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 상기 감사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불문으로 처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회신내용

- 고성지역자활센터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처분된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고성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 규정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군수)가 결정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퇴직한 공무원은 민간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징계 및 기타 공무원 신분상 처분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답변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인쇄

나의 민원 인쇄하기

*인쇄 페이지 열람 시 인쇄 이력이 기록됩니다.

인쇄자 : 조홍래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703-156949	신청일	2017-03-24 19:41:57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진행상황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전자우편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감사결과 송방망이 처벌 (주의14명,퇴직불문2명 등)
민원내용보기	경남고성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외1인은 ("고성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
"부패신고 사건으로 이첩된 국민권익위 송부의견서에 따라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자활사업에 필요한 도구 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전문가 인건비(수당), 기타 수용비등 행정부대경비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사업비를 "명절 선물비", "송년회비용", "기부금" 등에 집행	
-2011년도부터 2015년 기간동안 자활기금으로 지원받지 않은 9개 자활근로사업단 사무실 전세전포 월 임대비용을 사업비로 지급.	

감사결과

행.재정상 조치 : 경고(주민생활과)

신분상조치 : 주의 14명, 퇴직불문 2명. 끝.

분제점: 고성지역 자활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법률 제41조(처벌)에는 22조(용도외 사용금지)를 위반한자는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질의1. 형법을 명백히 위반사항인데 수사기간에 고발하지 않고 송방망이 처벌을 했을 경우 감사담당 외1인에게 행정처벌을 할수 있는 근거는 및 어떠한 처벌을 할수 있습니까?

질의2. 형법을 명백히 위반했는데 퇴직불문은 위법행위를 눈감아 준것이잖아요